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5-50
----------	-------

제출년월일 : 95. 11.
제 출 자 : 총무국장
(시민과)

1. 제안이유

○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함으로써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 민선자치구청장의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2급(이사관)상당으로 상향조정됨
(1995. 7. 1-대통령령 제14,705호)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2항
- 사무관리규정 제37조

3. 주요골자

-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날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공인"란 신설(안 제2조제5항)
- 구청장의 공인규격을 "2.1cm 정방형"에서 "2.4cm 정사각형"로 개정(안 별표1)
-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으로 개정(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4]와 같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구 본청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을 준용하고, 공인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별표 2]·[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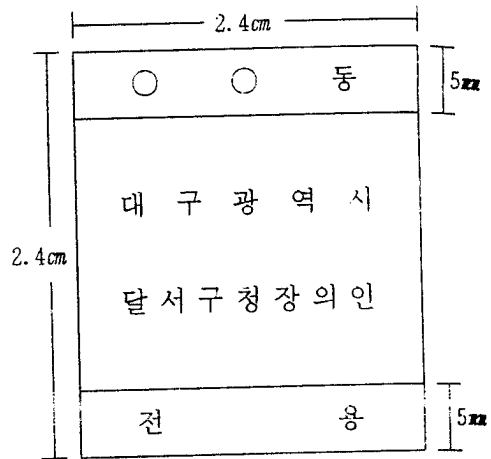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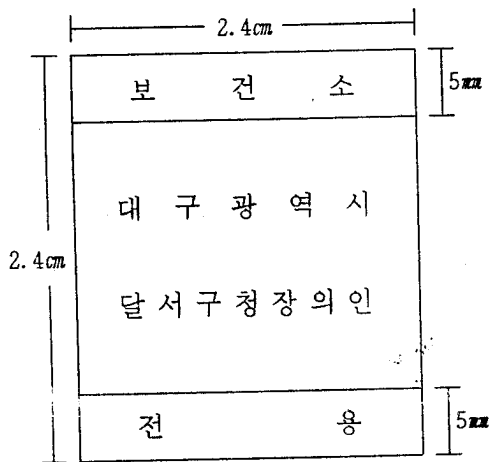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날인된 제반서식 및 용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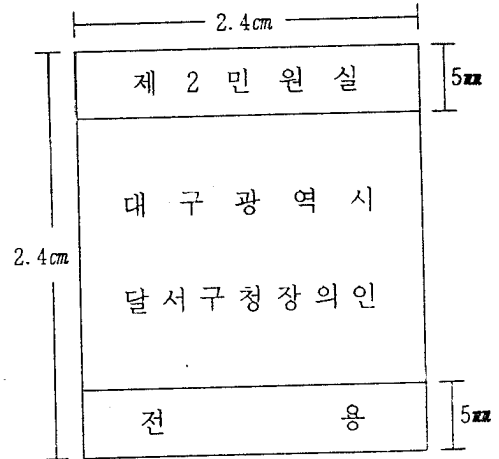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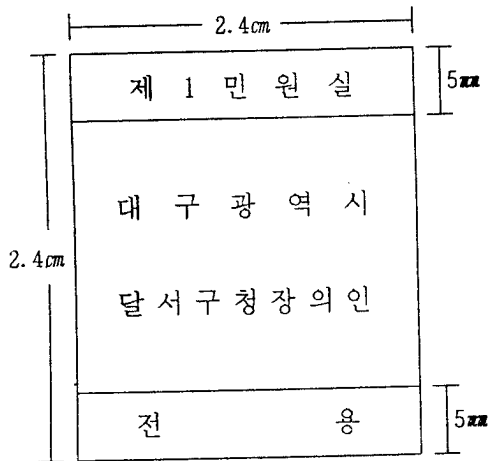
[별표 1]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구청장의 공인	2.4 cm 정사각형	
2. 보건소장의 공인	2.1 cm 정사각형	
3. 동장의 공인	2.1 cm 정사각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분임자의 공인	2.0 cm 정사각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1.8 cm 정사각형	
5. 인증기 공인		
가. 구청장의 공인	2.4 cm 정사각형	
나. 보건소장의 공인	2.1 cm 정사각형	
다. 동장의 공인	2.1 cm 정사각형	
6. 계 인		
가. 구본청 계인	[길이 3 cm 폭 1.3 cm 반타원형	
나. 보건소 계인		
다. 동사무소 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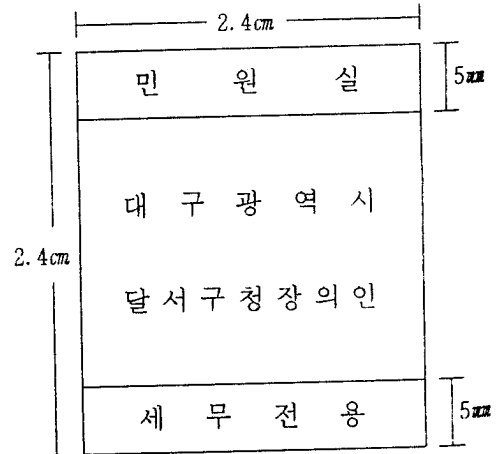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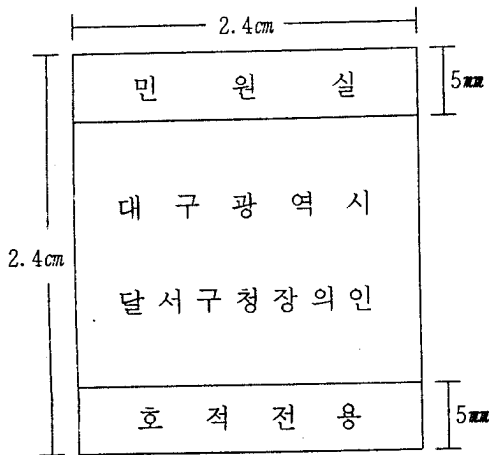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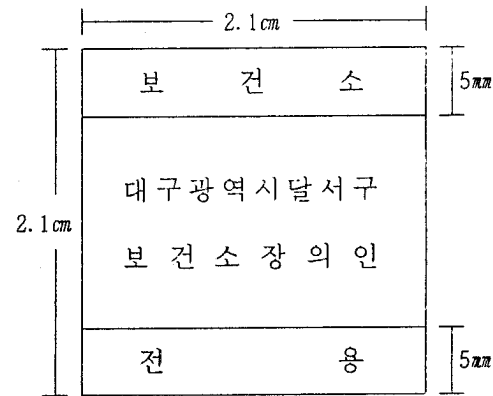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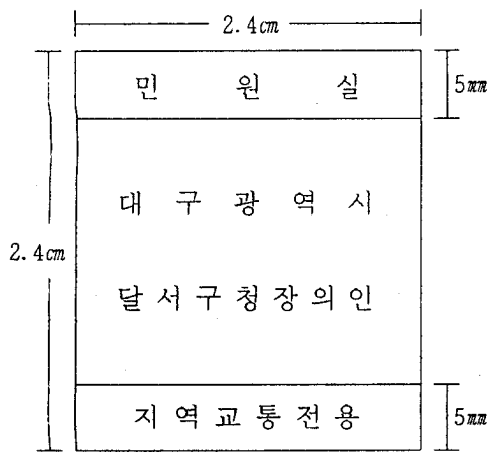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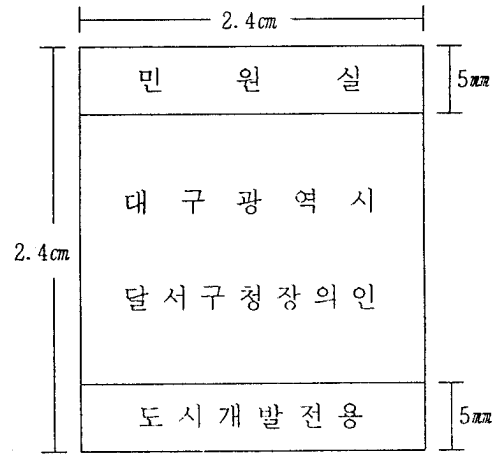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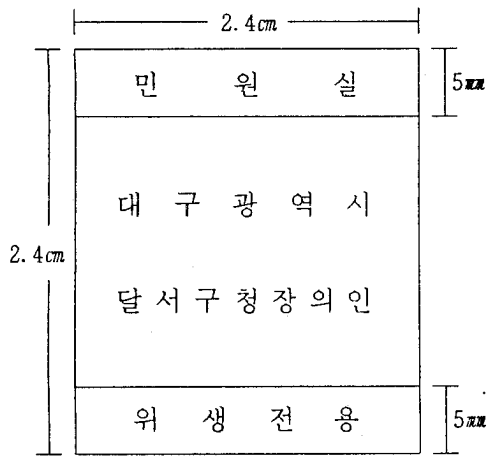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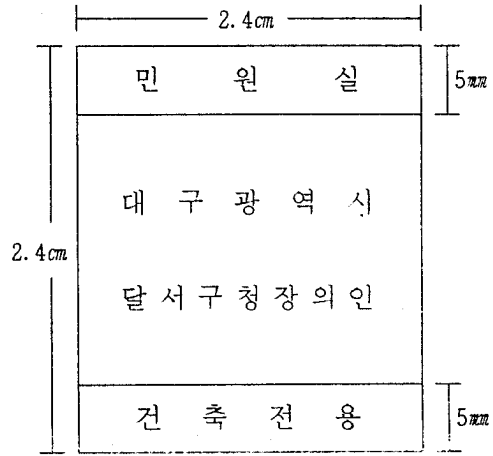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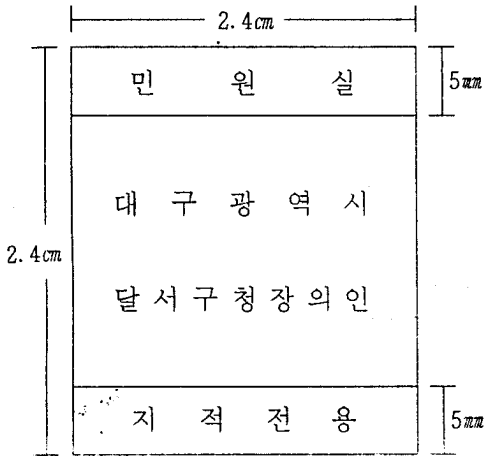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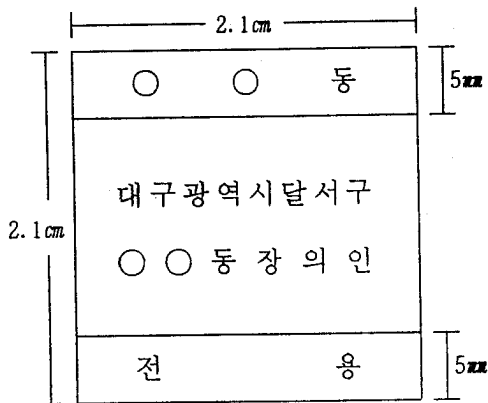
[별표 3]



[별표 4]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신 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⑤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4)와 같이 공인용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72호)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구 본청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을 준용하고, 공인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

현행	개정 (안)
<p>②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 쓰야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p>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별표 1]

공인의 구분	규격
1. 구청장의 공인	2.1cm 정방형
2.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방형
3. 동장의 공인	2.1cm 정방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분임자의 공인	2.0cm 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1.8cm 정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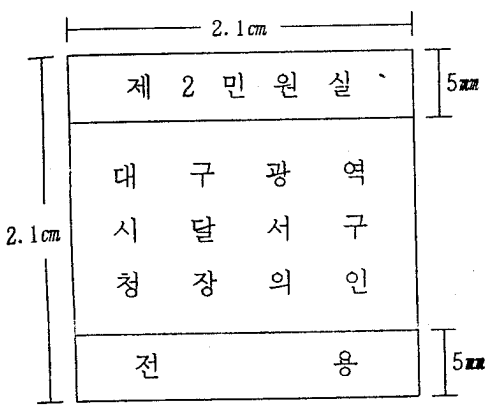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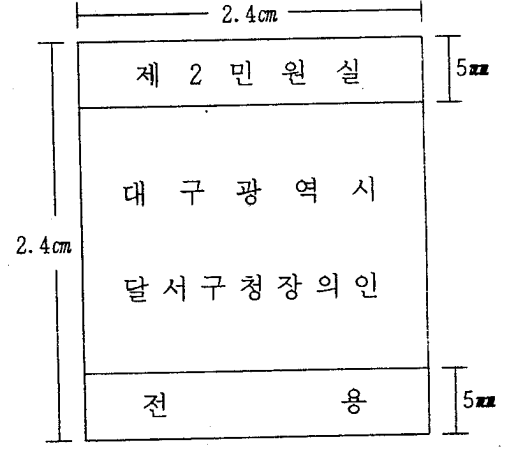
공인의 구분	규격
(신설)	
5. 계인	
가. 구분청 계인	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나. 보건소 계인	
다. 동사무소 계인	

[별표 1]

공인의 구분	규격
1. 구청장의 공인	2.4cm 정사각형
2.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3. 동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분임자의 공인	2.0cm 정사각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1.8cm 정사각형

공인의 구분	규격
5. 인증기 공인	
가. 구청장의 공인	2.4cm 정사각형
나.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다. 동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6. 계인	
가. 구분청 계인	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나. 보건소 계인	
다. 동사무소 계인	

현행	개정 (안)
<p>[별표 2]</p> <p>2.1cm</p> <p>2.1cm</p> <p>보 건 소</p> <p>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의인</p> <p>전 용</p> <p>5mm</p> <p>5mm</p> <p>5mm</p>	<p>[별표 2]</p> <p>2.4cm</p> <p>2.4cm</p> <p>보 건 소</p> <p>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의인</p> <p>전 용</p> <p>5mm</p> <p>5mm</p> <p>5mm</p>
<p>[별표 3]</p> <p>2.1cm</p> <p>2.1cm</p> <p>제 1 민 원 실</p> <p>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의인</p> <p>전 용</p> <p>5mm</p> <p>5mm</p> <p>5mm</p>	<p>[별표 3]</p> <p>2.4cm</p> <p>2.4cm</p> <p>제 1 민 원 실</p> <p>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의인</p> <p>전 용</p> <p>5mm</p> <p>5mm</p> <p>5mm</p>

현행	개정 (안)
 <p>2.1cm</p> <p>제 2 민 원 실</p> <p>5mm</p> <p>대 구 광 역 시</p> <p>달 서 구 청 장 의 인</p> <p>2.1cm</p> <p>전 용</p> <p>5mm</p>	 <p>2.4cm</p> <p>제 2 민 원 실</p> <p>5mm</p> <p>대 구 광 역 시</p> <p>달 서 구 청 장 의 인</p> <p>2.4cm</p> <p>전 용</p> <p>5mm</p>